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4.7.18.)되어 내년 시행('24.1.19.)을 앞두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하며, 시·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고 등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리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지자체가 사업의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 별표1)

나.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받도록 관련 절차 명시(안 제51조의6, 제51조의7)

다.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안 제51조의11)

- 라. 시·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처리 및 법 제65조 위반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에 관한 사무와 이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안 제65조)
- 마. 휴대전화 이용계약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액을 부과기준에 반영 (안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루목 개정 및 무목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등록의 결격사유)”를“(등록의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거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구역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기간통신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하 본 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임을 주장하려는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

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6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⑤ 제4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전문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적합성 평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적합성 평가 신청을 받은 외부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 수행 필요성

3.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

4. 기타 사업 목적의 공공의 이익과 부합성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 실적이 있을 것

⑧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6제2항 중 “후단”을 “후단 및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51조의7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51조의11 및 제51조의12를 각각 제51조의12 및 제51조의13으로 하고, 제51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제65조에 제8호의4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의 접수·처리 및 설치공사 등의 확인

9의2.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

9의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9의4. 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 정지명령 및 조치 명령
별표 1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의 적합성	지방자치단체로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받은 경우 적합하다는 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
------------	--

별표 8 제2호 중 “운용한”을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 중 “운용한”을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으로 한다.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루.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구목 및 무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무. 법 제92조제1항제1호 (제32조의4제2항을 위 반한 경우만 해당한 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104조제2항 제6호	1,000	2,000	3,0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한다.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u>법 제7조제1항</u>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거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구역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 각호의</u>

<신 설>

<신 설>

<신 설>

기간통신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
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않
은 경우(이하 본 조에서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한다)
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
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후단
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임을 주장하려는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부전문
기관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6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부
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⑤ 제4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신 설>

<신 설>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전문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적합성 평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적합성 평가 신청을 받은 외부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 수행 필요성
3.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
4. 기타 사업 목적의 공공의 이익과 부합성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6
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
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작일(제1항제4호부터 제
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
사의 설계도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
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
다.

② ----- 후단 및 단
서-----

③ -----

--. 다만,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

--.

1. 2. (생략)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① -----

-----.
다만,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

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제51조의11·제51조의12 (생략)

제65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

--. 다만, 시·도지사가 제1항
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
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

-----.

1. 2. (현행과 같음)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
반한 경우 법 제65조제5항에 따
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법 제
51조를 준용한다.

제51조의12·제51조의13 (현행 제
51조의11 및 제51조의12와 같
음)

제65조(권한의 위임) -----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제8호의3·제14호·제15호·제16호·제16호의2·제16호의3·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1. ~ 8의3. (생략)

<신설>

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

-----.

1. ~ 8의3. (현행과 같음)

8의4. 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의 접수·처리 및 설치공사 등의 확인

9. (현행과 같음)

9의2.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

9의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9의4. 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 정지명령 및 조

10. ~ 13. 삭제 14. ~ 22. (생략) [별표1]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1. ~ 3. (생략) <u>< 신설 ></u> [별표8]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 위반행위 1. (생략) 2.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통신통신설비를 <u>운용한</u> 경우 3. (생략) [별표10]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1. (생략)	<u>치 명령</u> 14. ~ 22. (현행과 같음) [별표1]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1. ~ 3.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data-bbox="842 645 1423 869"> <tr> <td data-bbox="842 645 943 869">4. 사업의 적합성</td><td data-bbox="943 645 1423 869">지방자치단체로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받은 경우 적합하다는 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td></tr> </table> [별표8]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 위반행위 1. (현행과 같음) 2. ----- ----- ----- -----<u>운용하거나</u> <u>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u> ---- 3. (현행과 같음) [별표10]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1. (현행과 같음)	4. 사업의 적합성	지방자치단체로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받은 경우 적합하다는 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
4. 사업의 적합성	지방자치단체로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받은 경우 적합하다는 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		

2.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
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
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3. (생 략)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
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이 상 위 반
루. 법 제92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구목의 경우 는 제외한다)	법 제10 4조 제5 항 제17 호	350	700	1,000

2. -----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
게 운용한 ----

3. (현행과 같음)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
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이 상 위 반
루. 법 제92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구목 및 무 목의 경우는 제외 한다)	법 제10 4조 제5 항 제17 호	350	700	1,000
무. 법 제92조제1항제 1호(제32조의4제2 항을 위반한 경우 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104조 제2항제 6호	1,000	2,000	3,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633